



의안번호	제 2014 - 18 호
보 고 연 월 일	2014. 7. 21. (제57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

# 목 차

I.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	1
1. 사건 접수 .....	1
2. 처리 현황 .....	13
I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32
III. 2014 양형기준 책자 발간 .....	33
1. 개요 .....	33
2. 추진 경과 .....	33
3. 제작 내역 .....	33
4. 국회 보고 .....	33
5. 기타 기관 배부 .....	34
IV. 전문위원 개입 .....	35
1. 전문위원 개입 .....	35
IV.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	37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	37
2. 서면질의 등 민원 및 회신 .....	39

---

---

# I.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 1. 사건 접수

○ 제1기 및 제2기,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의 양형기준 시행 이후  
2014. 3. 31.까지 법원에 접수된 사건의 죄명별 현황은 아래와 같음

### 가. 제1기 대상범죄(2009. 7. 1. ~ 2014. 3. 31.)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3. 12.	2014. 1. ~ 2014. 3.	전체
살인 범죄	강간살인	5	0	5
	강도살인	50	12	62
	강도살인미수	19	1	20
	살인	1,361	70	1,431
	살인교사	3	0	3
	살인미수	1,876	70	1,946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35	0	35
	존속살해	135	7	142
	존속살해미수	67	3	70
	특가법(보복살인등)	1	0	1
	폭처법(단체등의살인)	1	0	1
	전체	3,554	163	3,717
뇌물 범죄	뇌물공여	2,423	53	2,476
	뇌물공여교사	2	0	2
	뇌물공여약속	2	0	2
	뇌물공여의사표시	4	3	7
	뇌물수수	1,675	53	1,728
	뇌물약속	2	0	2
	뇌물요구	2	2	4
	부정처사후수뢰	83	2	85
	수뢰후부정처사	100	4	104
	제3자뇌물교부	128	0	128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3. 12.	2014. 1. ~ 2014. 3.	전체
	제3자뇌물취득	136	4	140
	특가법(뇌물)	553	7	560
	전체	5,110	128	5,238
성 범 죄	강간	983	71	1,054
	강간살인	5	0	5
	강간상해	754	28	782
	강간치사	7	0	7
	강간치상	1,291	35	1,326
	강도강간	79	3	82
	강제추행	7,009	611	7,620
	강제추행상해	163	1	164
	강제추행치상	517	5	522
	미성년자의제강간	96	1	97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9	0	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05	3	108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2	1	3
	상습강제추행	7	1	8
	상습준강제추행	3	0	3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715	13	728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11	0	11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171	0	171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200	1	201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186	5	191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41	0	41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395	8	403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139	1	140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83	3	186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17	0	17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49	2	51
	성폭력범죄(특수강간)	490	3	493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333	6	339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3. 12.	2014. 1. ~ 2014. 3.	전체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52	0	52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124	0	124
	성폭력범죄(특수준강제추행)	4	0	4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886	11	897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510	54	564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13	1	14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71	7	78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21	2	23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41	6	47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434	17	45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438	8	446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간)	127	10	137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156	24	180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330	5	335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	99	10	109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추행)	34	4	38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유사성행위)	20	1	2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준강간등)	91	21	112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피보호자간음)	4	1	5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76	3	79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996	34	1,030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261	14	275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305	25	330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28	4	32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67	3	70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1,044	29	1,073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302	9	311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159	9	168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443	19	462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36	2	38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3,018	69	3,087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3. 12.	2014. 1. ~ 2014. 3.	전체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상해)	9	1	10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치상)	13	7	20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제추행)	950	117	1,067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	110	16	126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추행)	100	7	107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유사성행위)	42	4	46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간음)	32	3	35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추행)	5	0	5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	191	24	215
	유사강간	32	11	43
	유사강간상해	3	1	4
	유사강간치상	6	4	10
	준강간	570	50	620
	준강간상해	3	0	3
	준강간치상	68	1	69
	준강제추행	1,036	92	1,128
	준강제추행상해	3	0	3
	준강제추행치사	1	0	1
	준강제추행치상	18	0	18
	준유사강간	16	6	22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394	0	394
	특가법(강도강간)	1	0	1
	전체		27,753	1,548
강도 범죄	강도	633	12	645
	강도교사	2	0	2
	강도살인	67	0	67
	강도상해	2,774	100	2,874
	강도상해교사	3	0	3
	강도치사	20	2	22
	강도치상	210	15	225
	준강도	351	13	364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3. 12.	2014. 1. ~ 2014. 3.	전체
	준특수강도	58	5	63
	특가법(강도)	36	0	36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48	2	50
	특강법(특수강도)	2	0	2
	특수강도	2,351	71	2,422
	전체	6,555	220	6,775
횡령 · 배임 범죄	배임	2,159	80	2,239
	배임교사	1	0	1
	업무상배임	2,681	125	2,806
	업무상횡령	11,214	477	11,691
	특경가법(배임)	1,346	43	1,389
	특경가법(배임)교사	1	0	1
	특경가법(횡령)	1,863	53	1,916
	특경가법(횡령)교사	1	0	1
	횡령	10,063	455	10,518
	전체	29,329	1,233	30,562
위증 범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5	0	5
	모해위증	83	2	85
	모해위증교사	2	0	2
	위증	5,421	223	5,644
	위증교사	752	24	776
	전체	6,263	249	6,512
무고 범죄	무고	7,881	273	8,154
	무고교사	32	3	35
	특가법(무고)	32	1	33
	특가법(무고)교사	1	0	1
	전체	7,946	277	8,223
<b>총계</b>		<b>86,510</b>	<b>3,818</b>	<b>90,328</b>

나. 제2기 대상범죄(2011. 7. 1. ~ 2014. 3. 31.)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3. 12.	2014. 1. ~ 2014. 3.	전체
약취· 유인 범죄	간음약취	3	0	3
	간음유인	3	3	6
	미성년자약취	35	7	42
	미성년자유인	27	0	27
	영리약취	6	1	7
	영리유인	14	4	18
	추행유인	4	0	4
	특가법(약취·유인)	23	1	24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	58	1	59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교사	1	0	1
	전체	174	17	191
사기 범죄	사기	90,307	8,662	98,969
	사기교사	5	0	5
	상습사기	348	27	375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2	0	2
	준사기	44	4	48
	컴퓨터등사용사기	1,040	123	1,163
	특경가법(사기)	2,181	214	2,395
	전체	93,927	9,030	102,957
절도 범죄	문화재보호법위반	77	10	87
	산림보호법위반	126	4	13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528	46	574
	상습절도	4	0	4
	상습특수절도	2	0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390	118	1,508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	3	0	3
	야간방실침입절도	139	8	147
	야간선박침입절도	4	0	4
	야간주거침입절도	913	68	981
	야간주거침입절도교사	1	0	1
절도	16,872	1,500	18,372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3. 12.	2014. 1. ~ 2014. 3.	전체
	절도교사	51	4	55
	특가법(산림)	88	24	112
	특가법(절도)	5,358	470	5,828
	특수절도	8,693	592	9,285
	특수절도교사	20	5	25
	전체	34,269	2,849	37,118
공 문 서 범 죄	공문서변조	228	22	250
	공문서변조교사	2	0	2
	공문서부정행사	970	51	1,021
	공문서부정행사교사	9	1	10
	공문서위조	782	68	850
	공문서위조교사	5	0	5
	공전자기록등변작	1	0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174	105	1,279
	공전자기록등위작	34	6	40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2	0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424	29	453
	변조공문서행사	17	0	17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74	3	77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30	3	33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2	0	2
	위조공문서행사	83	13	96
	자격모용공문서작성	1	0	1
	허위공문서작성	112	10	12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9	0	9
	전체	3,959	311	4,270
사 문 서 범 죄	변조사문서행사	157	15	172
	사도화위조	2	0	2
	사문서변조	168	10	178
	사문서부정행사	10	1	11
	사문서위조	3,558	329	3,887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3. 12.	2014. 1. ~ 2014. 3.	전체
	사문서위조교사	13	2	15
	사전자기록등변작	10	0	10
	사전자기록등위작	49	2	51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	2	0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3	0	3
	위조사문서행사	260	17	277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44	9	15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10	0	10
	허위작성진단서행사	6	0	6
	허위진단서작성	32	0	32
	허위진단서작성교사	2	0	2
	전체	4,426	385	4,811
공무 집행 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12,356	1,050	13,406
	공무집행방해교사	1	0	1
	공용건조물파괴	3	0	3
	공용물건무효	3	0	3
	공용물건손상	1,363	95	1,458
	공용물건은닉	5	0	5
	공용서류무효	30	1	31
	공용서류손상	122	11	133
	공용서류은닉	10	0	10
	공용전자기록등손상	4	0	4
	위계공무집행방해	619	59	678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2	0	2
	특수공무집행방해	758	76	83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422	18	440
	특수공용물건손상	25	2	27
전체	15,723	1,312	17,035	
식품 · 보건 범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340	29	369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16	0	1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1,486	167	1,653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3. 12.	2014. 1. ~ 2014. 3.	전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4	1	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31	0	3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720	48	76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교사	1	0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21	2	23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3	0	3
	식품위생법위반	3,838	430	4,268
	식품위생법위반교사	3	0	3
	약사법위반	904	63	967
	의료법위반	1,955	133	2,088
	의료법위반교사	3	2	5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5	0	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463	83	54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교사	1	0	1
	화장품법위반	58	4	62
	전체	9,852	962	10,814
	마약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431	1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112	17	1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8,164	609	8,77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960	35	995
특가법(마약)		2	0	2
특가법(향정)		30	3	33
전체		10,699	814	11,513
<b>총계</b>		<b>173,029</b>	<b>15,680</b>	<b>188,709</b>

다. 제3기 대상범죄(2012. 7. 1. ~ 2014. 3. 31.)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3. 12.	2014. 1. ~ 2014. 3.	전체
증권 · 금융 범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469	65	534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36	11	47
	증권거래법위반	67	4	71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3. 12.	2014. 1. ~ 2014. 3.	전체
	특경가법(수재등)	62	13	75
	특경가법(알선수재)	170	28	198
	특경가법(증재등)	50	12	62
	전체	854	133	987
지식 재산 범죄	디자인보호법위반	37	8	4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3	0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136	4	140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10	1	11
	상표법위반	1,342	176	1,518
	실용신안법위반	11	2	13
	저작권법위반	991	141	1,132
	특허법위반	26	2	28
	전체	2,556	334	2,890
폭력 범죄	상습존속폭행	1	0	1
	상습폭행	4	0	4
	상해	24,427	3,592	28,019
	상해교사	4	0	4
	상해치사	143	18	161
	존속상해	153	11	164
	존속상해치사	10	4	14
	존속중상해	2	0	2
	존속폭행	51	4	55
	존속폭행치사	3	0	3
	존속폭행치상	3	1	4
	존속협박	11	3	14
	중상해	80	7	87
	특가법(보복범죄등)	45	0	45
	특가법(보복상해등)	38	9	47
	특가법(보복폭행등)	39	6	45
	특가법(보복협박등)	72	20	92
특가법(운전자폭행등)	1,168	213	1,381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3. 12.	2014. 1. ~ 2014. 3.	전체
	특수존속협박	1	0	1
	특수폭행	102	5	107
	특수폭행치사	1	0	1
	특수폭행치상	5	0	5
	특수협박	137	12	149
	폭처법(공동상해)	6,265	832	7,097
	폭처법(공동상해)교사	2	0	2
	폭처법(공동존속상해)	10	0	10
	폭처법(공동폭행)	1,474	255	1,729
	폭처법(공동폭행)교사	5	1	6
	폭처법(공동협박)	184	25	209
	폭처법(공동협박)교사	1	0	1
	폭처법(단체등의공동상해)	4	0	4
	폭처법(단체등의공동폭행)	7	1	8
	폭처법(단체등의공동협박)	9	1	10
	폭처법(단체등의상습집단·흥기등상해)	1	1	2
	폭처법(단체등의상습집단·흥기등폭행)	1	0	1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상해)	27	0	27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폭행)	11	0	11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협박)	11	0	11
	폭처법(상습상해)	143	9	152
	폭처법(상습존속상해)	6	0	6
	폭처법(상습존속폭행)	7	0	7
	폭처법(상습존속협박)	1	0	1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상해)	6	0	6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존속상해)	1	0	1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존속협박)	1	0	1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폭행)	2	0	2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협박)	5	0	5
	폭처법(상습폭행)	108	8	116
	폭처법(상습협박)	17	0	17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3. 12.	2014. 1. ~ 2014. 3.	전체
	폭처법(야간·공동상해)	19	6	25
	폭처법(야간·공동폭행)	0	1	1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	8,435	1,037	9,472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교사	9	3	12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상해)	44	3	47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폭행)	8	1	9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협박)	22	1	23
	폭처법(집단·흥기등폭행)	1,869	261	2,130
	폭처법(집단·흥기등폭행)교사	2	0	2
	폭처법(집단·흥기등협박)	2,301	309	2,610
	폭행	9,774	1,664	11,438
	폭행치사	123	14	137
	폭행치상	322	62	384
	협박	1,342	192	1,534
	협박교사	2	0	2
		전체	59,081	8,592
교통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6,386	2,635	19,021
	특가법(도주차량)	7,805	1,124	8,929
	특가법(도주차량)교사	1	0	1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5,069	650	5,719
	전체	29,261	4,409	33,670
선거 범죄	공직선거법위반	986	43	1,029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4	0	4
	전체	990	43	1,033
조세 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	780	346	1,126
	지방세기본법위반	6	1	7
	특가법(조세)	45	20	65
	특가법(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156	55	211
	전체	987	422	1,409
공갈 범죄	공갈	207	83	290
	특경가법(공갈)	5	1	6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3. 12.	2014. 1. ~ 2014. 3.	전체
	폭처법(공동공갈)	267	112	379
	폭처법(공동공갈)교사	2	0	2
	폭처법(상습공갈)	7	6	13
	폭처법(야간·공동공갈)	1	0	1
	폭처법(집단·흥기등공갈)	9	10	19
	전체	498	212	710
방화 범죄	공용건조물방화	1	2	3
	공용자동차방화	1	0	1
	일반건조물방화	26	10	36
	일반물건방화	21	7	28
	일반자동차방화	21	5	26
	현존건조물방화	11	5	16
	현존건조물방화치상	0	2	2
	현존자동차방화치사	0	1	1
	현주건조물방화	86	27	113
	현주건조물방화치사	3	1	4
	현주건조물방화치상	10	5	15
	전체	180	65	245
<b>총계</b>		<b>94,407</b>	<b>14,210</b>	<b>108,617</b>

※ 1. 선거범죄는 2012. 9. 1. 이후 접수건수임.

2. 조세, 공갈, 방화범죄는 2013. 7. 1. 이후 접수건수임.

- 위 통계에는 피고인이 소년인 사건, 정식재판청구사건, 미수범사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사건 등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양형기준이 적용될 사건 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임

## 2. 처리 현황

- 제1기 및 제2기,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의 양형기준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되어 2014. 3. 31.까지 제1심 법원에서 처리된 현황은 아래와 같음

가. 범죄군별 처리건수

(1) 제1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09. 7. 1. ~ 2014. 3. 31.)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09. 7. ~ 2013. 12.	살인범죄	수	3,170	2	0	3,172
		비율	99.9%	0.1%	0.0%	100.0%
	뇌물범죄	수	2,263	1,431	75	3,769
		비율	60.0%	38.0%	2.0%	100.0%
	성범죄	수	16,469	3,481	1,748	21,698
		비율	75.9%	16.0%	8.1%	100.0%
	강도범죄	수	5,709	38	0	5,747
		비율	99.3%	0.7%	0.0%	100.0%
	횡령·배임범죄	수	3,721	16,531	4,617	24,869
		비율	15.0%	66.5%	18.6%	100.0%
	위증범죄	수	114	4,264	1,070	5,448
		비율	2.1%	78.3%	19.6%	100.0%
	무고범죄	수	223	4,788	1,516	6,527
		비율	3.4%	73.4%	23.2%	100.0%
전체	수	31,669	30,535	9,026	71,230	
	비율	44.5%	42.9%	12.7%	100.0%	
2014. 1. ~ 2014. 3.	살인범죄	수	170	1	0	171
		비율	99.4%	0.6%	0.0%	100.0%
	뇌물범죄	수	105	50	1	156
		비율	67.3%	32.1%	0.6%	100.0%
	성범죄	수	1,014	692	78	1,784
		비율	56.8%	38.8%	4.4%	100.0%
	강도범죄	수	229	1	0	230
		비율	99.6%	0.4%	0.0%	100.0%
	횡령·배임범죄	수	187	806	228	1,221
		비율	15.3%	66.0%	18.7%	100.0%
위증범죄	수	1	190	68	259	
	비율	0.4%	73.4%	26.3%	100.0%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무고범죄	수	13	230	70	313
		비율	4.2%	73.5%	22.4%	100.0%
	전체	수	1,719	1,970	445	4,134
		비율	41.6%	47.7%	10.8%	100.0%

(2)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1. 7. 1. ~ 2014. 3. 31.)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11. 7. ~ 2013. 12.	약취·유인범죄	수	141	46	0	187	
		비율	75.4%	24.6%	0.0%	100.0%	
	사기범죄	수	4,504	52,742	16,603	73,849	
		비율	6.1%	71.4%	22.5%	100.0%	
	절도범죄	수	3,136	22,393	5,536	31,065	
		비율	10.1%	72.1%	17.8%	100.0%	
	공문서범죄	수	216	1,820	852	2,888	
		비율	7.5%	63.0%	29.5%	100.0%	
	사문서범죄	수	193	2,528	1,289	4,010	
		비율	4.8%	63.0%	32.1%	100.0%	
	공무집행방해범죄	수	820	6,392	5,747	12,959	
		비율	6.3%	49.3%	44.3%	100.0%	
	식품·보건범죄	수	204	2,244	5,366	7,814	
		비율	2.6%	28.7%	68.7%	100.0%	
	마약범죄	수	1,342	7,870	159	9,371	
		비율	14.3%	84.0%	1.7%	100.0%	
	전체	수	10,556	96,035	35,552	142,143	
		비율	7.4%	67.6%	25.0%	100.0%	
	2014. 1. ~ 2014. 3.	약취·유인범죄	수	8	6	0	14
			비율	57.1%	42.9%	0.0%	100.0%
사기범죄		수	537	6,854	1,502	8,893	
		비율	6.0%	77.1%	16.9%	100.0%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절도범죄	수	301	1,934	543	2,778
		비율	10.8%	69.6%	19.5%	100.0%
	공문서범죄	수	8	213	70	291
		비율	2.7%	73.2%	24.1%	100.0%
	사문서범죄	수	13	303	108	424
		비율	3.1%	71.5%	25.5%	100.0%
	공무집행방해범죄	수	74	573	474	1,121
		비율	6.6%	51.1%	42.3%	100.0%
	식품·보건범죄	수	19	341	612	972
		비율	2.0%	35.1%	63.0%	100.0%
	마약범죄	수	141	675	18	834
		비율	16.9%	80.9%	2.2%	100.0%
	전체	수	1,101	10,899	3,327	15,327
		비율	7.2%	71.1%	21.7%	100.0%

(3)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2. 7. 1. ~ 2014. 3. 31.)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12. 7. ~ 2013. 12.	증권·금융범죄	수	178	212	44	434
		비율	41.0%	48.8%	10.1%	100.0%
	지식재산권범죄	수	5	732	1,305	2,042
		비율	0.2%	35.8%	63.9%	100.0%
	폭력범죄	수	2,256	22,434	23,442	48,132
		비율	4.7%	46.6%	48.7%	100.0%
	교통범죄	수	1,433	15,821	7,585	24,839
		비율	5.8%	63.7%	30.5%	100.0%
	선거범죄	수	852	37	0	889
		비율	95.8%	4.2%	0.0%	100.0%
	조세범죄	수	23	169	105	297
		비율	7.7%	56.9%	35.4%	100.0%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공갈범죄	수	23	174	39	236
		비율	9.7%	73.7%	16.5%	100.0%
	방화범죄	수	106	4	0	110
		비율	96.4%	3.6%	0.0%	100.0%
	전체	수	4,876	39,583	32,520	76,979
		비율	6.3%	51.4%	42.2%	100.0%
2014. 1. ~ 2014. 3.	증권·금융범죄	수	43	65	7	115
		비율	37.4%	56.5%	6.1%	100.0%
	지식재산권범죄	수	0	137	190	327
		비율	0.0%	41.9%	58.1%	100.0%
	폭력범죄	수	352	4,107	3,353	7,812
		비율	4.5%	52.6%	42.9%	100.0%
	교통범죄	수	25	2,589	1,050	3,664
		비율	0.7%	70.7%	28.7%	100.0%
	선거범죄	수	40	2	0	42
		비율	95.2%	4.8%	0.0%	100.0%
	조세범죄	수	64	156	77	297
		비율	21.5%	52.5%	25.9%	100.0%
	공갈범죄	수	13	141	24	178
		비율	7.3%	79.2%	13.5%	100.0%
	방화범죄	수	66	0	0	66
		비율	100.0%	0.0%	0.0%	100.0%
	전체	수	603	7,197	4,701	12,501
		비율	4.8%	57.6%	37.6%	100.0%

※ 1. 선거범죄는 2012. 9. 1. 이후 처리건수임.

2. 조세, 공갈, 방화범죄는 2013. 7. 1. 이후 처리건수임.

## 나. 세부죄명별 처리건수

(1) 제1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09. 7. 1. ~ 2014. 3. 31.)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3. 12.	2014. 1. ~ 2014. 3.	전체
살인 범죄	강간살인	4	0	4
	강도살인	32	6	44
	강도살인미수	22	1	24
	살인	1,222	70	1,362
	살인교사	3	0	3
	살인미수	1,680	72	1,824
	살인미수교사	2	0	2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24	4	3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미수	1	0	1
	존속살해	117	11	139
	존속살해미수	59	7	73
	특가법(보복범죄등)	2	0	2
	특가법(보복살인등)	1	0	1
	폭처법(단체등의살인)	2	0	2
	전체	3,172	171	3,514
뇌물 범죄	뇌물공여	1,766	77	1,920
	뇌물공여교사	3	0	3
	뇌물수수	1,178	43	1,264
	뇌물요구	1	0	1
	부정처사후수뢰	65	1	67
	수뢰후부정처사	85	2	89
	제3자뇌물교부	96	3	102
	제3자뇌물취득	105	4	113
	특가법(뇌물)	470	26	522
	전체	3,769	156	4,081
성 범 죄	강간	676	60	796
	강간살인	3	0	3
	강간상해	688	21	730
	강간치사	7	0	7
	강간치상	1,115	37	1,189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3. 12.	2014. 1. ~ 2014. 3.	전체
	강도강간	70	2	74
	강제추행	4,611	692	5,995
	강제추행상해	172	4	180
	강제추행치상	484	17	518
	미성년자간음	6	1	8
	미성년자의제강간	75	5	85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10	0	1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66	3	7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1	0	1
	미성년자추행	1	0	1
	미성년자유사강간	0	0	0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0	2	4
	상습강제추행	3	0	3
	상습준강제추행	2	0	2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625	21	667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0	1	2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1	0	1
	성폭력범죄(13세미만위계등간음)	1	0	1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8	0	8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154	1	156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159	2	163
	성폭력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1	0	1
	성폭력범죄(장애인강간)	0	1	2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166	1	168
	성폭력범죄(장애인위계등간음)	1	0	1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41	0	41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368	2	372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119	6	131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44	2	148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15	1	17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32	0	32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3. 12.	2014. 1. ~ 2014. 3.	전체
	성폭력범죄(특수강간)	364	0	364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320	2	324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40	0	40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76	0	76
	성폭력범죄(특수준강제추행)	4	0	4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804	22	848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381	70	521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15	3	21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58	13	84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17	4	25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32	10	52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유사성행위)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369	15	399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사)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361	16	393
	성폭력범죄특례법(미성년자강간등)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간음)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간)	89	19	127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114	17	148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286	23	332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	93	11	115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추행)	26	3	32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력등추행)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유사성행위)	15	4	23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준강간등)	57	0	57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피보호자간음)	4	0	4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66	1	68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886	61	1,008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제추행)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217	11	239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3. 12.	2014. 1. ~ 2014. 3.	전체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67	17	301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31	2	35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58	7	72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793	41	875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307	6	319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130	1	132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292	35	362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29	4	37
	아동·청소년성보호법	4	0	4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2,700	76	2,852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상해)	8	2	12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치상)	6	4	14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제추행)	729	124	977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	105	21	147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추행)	83	22	127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유사성행위)	31	6	43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간음)	33	4	4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위계등추행)	1	0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추행)	3	1	5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	162	45	252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교사	1	0	1
	유사강간	9	10	29
	유사강간상해	1	3	7
	유사강간치상	2	2	6
	준강간	381	49	479
	준강간상해	3	0	3
	준강간치상	59	4	67
	준강제추행	720	103	926
	준강제추행상해	3	0	3
	준강제추행치사	1	0	1
	준강제추행치상	16	1	18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3. 12.	2014. 1. ~ 2014. 3.	전체
	준유사강간	8	7	22
	청소년성보호법	1	0	1
	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4	0	4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187	0	187
	특가법(강도강간)	1	0	1
	전체	21,698	1,784	25,266
강도 범죄	강도	575	18	611
	강도교사	1	0	1
	강도살인	63	0	63
	강도상해	2,266	87	2,440
	강도상해교사	2	0	2
	강도치사	29	0	29
	강도치상	187	5	197
	준강도	333	15	363
	준특수강도	53	2	57
	특가법(강도)	42	1	44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51	0	51
	특강법(특수강도)	1	0	1
	특수강도	2,144	102	2,348
	전체	5,747	230	6,207
횡령 · 배임 범죄	배임	1,823	77	1,977
	배임교사	2	1	4
	업무상배임	1,910	117	2,144
	업무상배임교사	0	1	2
	업무상횡령	9,662	470	10,602
	특경가법(배임)	1,081	47	1,175
	특경가법(횡령)	1,688	92	1,872
	횡령	8,702	416	9,534
	횡령교사	1	0	1
	전체	24,869	1,221	27,311
위증	모해위증	70	5	80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3. 12.	2014. 1. ~ 2014. 3.	전체
범죄	모해위증교사	1	1	3
	위증	4,610	214	5,038
	위증교사	767	39	845
	전체	5,448	259	5,966
무고 범죄	무고	6,466	305	7,076
	무고교사	28	7	42
	특가법(무고)	32	1	34
	특가법(무고)교사	1	0	1
	전체	6,527	313	7,153
<b>총계</b>		<b>71,230</b>	<b>4,134</b>	<b>75,364</b>

(2)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1. 7. 1. ~ 2014. 3. 31.)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3. 12.	2014. 1. ~ 2014. 3.	전체
약취 · 유인 범죄	간음약취	2	0	2
	간음유인	4	0	4
	미성년자약취	31	4	35
	미성년자유인	28	2	30
	영리약취	4	1	5
	영리유인	8	4	12
	추행유인	3	0	3
	특가법(약취·유인)	22	2	24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	85	1	86
	전체	187	14	201
사기 범죄	사기	70,461	8,374	78,835
	사기교사	6	0	6
	상습사기	305	30	335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2	0	2
	준사기	37	6	43
	컴퓨터등사용사기	1,122	234	1,356
	특경가법(사기)	1,916	249	2,165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3. 12.	2014. 1. ~ 2014. 3.	전체
	전체	73,849	8,893	82,742
절도 범죄	문화재보호법위반	59	3	62
	산림보호법위반	96	5	10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389	47	436
	상습절도	8	0	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222	103	1,3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	2	0	2
	야간방실침입절도	138	9	147
	야간선박침입절도	2	0	2
	야간주거침입절도	909	89	998
	야간주거침입절도교사	1	0	1
	절도	14,215	1,313	15,528
	절도교사	41	4	45
	특가법(산림)	65	5	70
	특가법(상습절도)	3	0	3
	특가법(절도)	5,318	469	5,787
	특수절도	8,582	728	9,310
	특수절도교사	15	3	18
	전체	31,065	2,778	33,843
	공 문 서 범 죄	공도화변조	1	0
공문서변조		196	13	209
공문서변조교사		2	0	2
공문서부정행사		527	44	571
공문서부정행사교사		6	0	6
공문서위조		607	74	681
공문서위조교사		4	0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023	112	1,13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교사		1	0	1
공전자기록등위작		26	1	27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1	0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320	23	343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3. 12.	2014. 1. ~ 2014. 3.	전체
	변조공문서행사	4	2	6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5	0	5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4	1	5
	위조공문서행사	50	10	60
	허위공문서작성	108	11	119
	허위공문서작성교사	1	0	1
	허위공문서행사	1	0	1
	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0	1
	전체	2,888	291	3,179
사 문 서 범 죄	변조사문서행사	16	2	18
	사문서변조	216	29	245
	사문서부정행사	6	0	6
	사문서위조	3,449	362	3,811
	사문서위조교사	11	1	12
	사문서위조행사	1	1	2
	사전자기기록등변작	7	0	7
	사전자기기록등위작	39	5	44
	사전자기기록등위작교사	2	0	2
	위작사전자기기록등행사	1	0	1
	위조사문서행사	111	13	124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24	9	133
	허위작성진단서행사	2	0	2
	허위진단서작성	24	1	25
	허위진단서작성교사	1	1	2
전체	4,010	424	4,434	
공 무 집 행 방 해 범 죄	공무집행방해	9,879	827	10,706
	공무집행방해교사	1	0	1
	공용건물손상	1	0	1
	공용건조물파괴	3	0	3
	공용물건무효	3	0	3
	공용물건손상	1,272	89	1,361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3. 12.	2014. 1. ~ 2014. 3.	전체
	공용물건손상교사	2	0	2
	공용물건은닉	4	0	4
	공용서류무효	26	2	28
	공용서류손상	107	11	118
	공용서류은닉	9	1	10
	공용전자기록등손상	1	0	1
	위계공무집행방해	528	59	587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2	0	2
	특수공무집행방해	670	77	74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424	55	479
	특수공용건조물파괴	1	0	1
	특수공용물건손상	26	0	26
	전체	12,959	1,121	14,080
	식품 · 보건 범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213	53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10	0	1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1,307	136	1,443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4	1	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17	6	2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594	78	67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13	1	14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1	1	2
식품위생법위반		3,115	401	3,516
식품위생법위반교사		3	0	3
약사법위반		698	59	757
의료법위반		1,495	145	1,640
의료법위반교사		5	0	5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4	0	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282	87	36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교사		1	0	1
화장품법위반		52	4	56
전체	7,814	972	8,786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3. 12.	2014. 1. ~ 2014. 3.	전체
마약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138	97	1,2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89	13	1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7,240	676	7,91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885	43	928
	특가법(마약)	2	1	3
	특가법(향정)	17	4	21
	전체	9,371	834	10,205
<b>총계</b>		<b>142,143</b>	<b>15,327</b>	<b>157,470</b>

(3)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2. 7. 1. ~ 2014. 3. 31.)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3. 12.	2014. 1. ~ 2014. 3.	전체
증권 · 금융 범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17	67	284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7	3	10
	증권거래법위반	45	4	49
	특경가법(수재등)	31	6	37
	특경가법(알선수재)	104	25	129
	특경가법(증재등)	30	10	40
	전체	434	115	549
지식 재산 범죄	디자인보호법위반	22	7	2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36	13	49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1	2
	상표법위반	1,169	183	1,352
	실용신안법위반	6	1	7
	저작권법위반	793	120	913
	특허법위반	15	2	17
	전체	2,042	327	2,369
폭력 범죄	상습준속폭행	0	1	1
	상습폭행	3	0	3
	상습협박	1	0	1
	상해	19,241	3,106	22,347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3. 12.	2014. 1. ~ 2014. 3.	전체
	상해교사	2	2	4
	상해치사	123	24	147
	존속상해	155	14	169
	존속상해치사	11	0	11
	존속중상해	3	0	3
	존속폭행	40	6	46
	존속폭행치사	2	1	3
	존속폭행치상	5	1	6
	존속협박	7	0	7
	중상해	62	8	70
	집단흥기등폭행	1	1	2
	특가법(보복범죄등)	159	6	165
	특가법(보복상해등)	26	17	43
	특가법(보복폭행등)	32	8	40
	특가법(보복협박등)	59	23	82
	특가법(운전자폭행등)	1,089	167	1,256
	특가법(협박)	1	0	1
	특수존속협박	1	0	1
	특수폭행	93	15	108
	특수폭행치상	2	0	2
	특수협박	118	13	131
	폭처법(공동감금)	1	0	1
	폭처법(공동상해)	5,262	780	6,042
	폭처법(공동상해)교사	3	0	3
	폭처법(공동존속상해)	9	0	9
	폭처법(공동폭행)	1,228	212	1,440
	폭처법(공동폭행)교사	4	1	5
	폭처법(공동협박)	145	27	172
	폭처법(공동협박)교사	0	1	1
	폭처법(단체등의공동상해)	3	1	4
	폭처법(단체등의공동폭행)	3	0	3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3. 12.	2014. 1. ~ 2014. 3.	전체
	폭처법(단체등의공동협박)	4	0	4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상해)	23	3	26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폭행)	7	1	8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협박)	8	0	8
	폭처법(보복협박등)	1	0	1
	폭처법(상습상해)	122	17	139
	폭처법(상습존속상해)	3	1	4
	폭처법(상습존속폭행)	9	1	10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상해)	6	3	9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존속상해)	2	0	2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폭행)	5	0	5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협박)	5	0	5
	폭처법(상습폭행)	85	15	100
	폭처법(상습협박)	17	3	20
	폭처법(야간·공동상해)	14	5	19
	폭처법(야간·공동협박)	1	0	1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	7,190	1,190	8,380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교사	5	0	5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상해)	45	10	55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폭행)	14	0	14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협박)	28	2	30
	폭처법(집단·흥기등폭행)	1,552	275	1,827
	폭처법(집단·흥기등폭행)교사	1	0	1
	폭처법(집단·흥기등협박)	2,220	393	2,613
	폭처법(흥기등상해)	11	0	11
	폭처법(흥기등협박)	8	0	8
	폭행	7,387	1,231	8,618
	폭행교사	3	0	3
	폭행치사	101	14	115
	폭행치상	283	60	343
	협박	1,077	153	1,230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3. 12.	2014. 1. ~ 2014. 3.	전체
	협박교사	1	0	1
	전체	48,132	7,812	55,944
교통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3,830	2,124	15,954
	특가법(도주차량)	6,560	937	7,497
	특가법(도주차량)교사	1	0	1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4,448	603	5,051
	전체	24,839	3,664	28,503
선거 범죄	공직선거법위반	884	42	92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5	0	5
	전체	889	42	931
조세 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	290	247	537
	지방세법위반	0	1	1
	특가법(조세)	7	8	15
	특가법(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0	41	41
	전체	297	297	594
공갈 범죄	공갈	89	63	152
	특경가법(공갈)	1	1	2
	폭처법(공동공갈)	132	101	233
	폭처법(공동공갈)교사	0	1	1
	폭처법(상습공갈)	6	5	11
	폭처법(집단·흥기등공갈)	8	7	15
	전체	236	178	414
방화 범죄	공용건조물방화	0	1	1
	공용자동차방화	2	0	2
	산림보호법위반	0	1	1
	일반건조물방화	13	8	21
	일반물건방화	13	8	21
	일반자동차방화	12	10	22
	현존건조물방화	7	1	8
	현존건조물방화치사	1	0	1
	현존건조물방화치상	0	1	1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3. 12.	2014. 1. ~ 2014. 3.	전체
	현주건조물방화	57	30	87
	현주건조물방화치사	2	2	4
	현주건조물방화치상	3	4	7
	전체	110	66	176
	<b>총계</b>	<b>76,979</b>	<b>12,501</b>	<b>89,480</b>

※ 1. 선거범죄는 2012. 9. 1. 이후 처리건수임.

2. 조세, 공갈, 방화범죄는 2013. 7. 1. 이후 처리건수임.

## I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회의	제82차	2014. 7. 7. 16:00	○ 권리행사방해, 장물, 손괴범죄 양 형기준 설정 방안 검토

### Ⅲ. 2014 양형기준 책자 발간

#### 1. 개요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형기준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운영지원단은 신설된 제4기 전반기 양형기준(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과 약취·유인범죄 수정 양형기준 등 지금까지 설정이 완료된 모든 양형기준을 관보에 게재하는 외에 양형기준 책자의 발간을 통하여 공개하였음을 보고

#### 2. 추진 경과

- 제3기 양형기준 책자 발간 계획(안) 결재 : 2014. 5. 14.
- 초안 완성 및 견본 제작 : 2014. 6. 10.
- 교정 작업 및 인쇄 의뢰 : 2014. 6. 19.
- 배부 및 국회 보고 : 2014. 6. 26.

#### 3. 제작 내역

- 발간 부수 : 7,500부
- 책자 규격 및 분량
  - 16절(1도 인쇄, 46배판)
  - 613쪽

#### 4. 국회 보고

- 법제사법위원회 각 위원실 방문하여 양형기준 책자 인편으로 배송 완료
- 나머지 의원의 경우 사서함을 통하여 배송

## 5. 기타 기관 배부

### ○ 배부원칙

- 양형기준 책자의 적정한 배포 및 관리
- 예산낭비 방지 및 활용의 극대화

### ○ 배부기준

- 홍보가치와 경제성을 고려하여 활용도가 높은 기관 우선 배부
- 필요적 이용기관과 연구기관 선정 배부
- 사법발전에 기여하거나 자료가치를 높이는 부서에 배부

### ○ 배부처

-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학회, 주요 시민단체, 언론기관, 주요 도서관 등

## IV. 전문위원 개입

### 1. 전문위원 개입

#### 가. 개요

- 2014. 7. 17.자로 최진녕 전문위원 임기만료
-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문위원 위촉

#### ◆ 관련 규정 ◆

##### 양형위원회규칙 제8조 (전문위원)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 ② 전문위원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법관 중 1인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명한다.

#### 나. 고려사항

- 연구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분위기 쇄신
  - 종전 연구 성과를 토대로 제1, 2, 3기 양형기준 수정 및 제4기 후반기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업무 수행
- 정기적인 업무수행 평가를 통해 전문위원 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 그동안의 전문위원의 연구 성과와 활동 내역을 객관적으로 검토·평가하여 개선 방안 모색
- 전문위원 선정 원칙의 반영
  -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강화
  - 전문위원 연령 및 전문성 고려
  - 다양한 전공분야 안배

- 추천 기관 또는 위원 의견 존중

**다. 연임 위촉**

○ 최진녕 변호사(2014. 7. 18.자 연임)

**라. 진행 경과**

○ 2014. 7. 17.자로 최진녕 전문위원 임기만료

○ 2014. 7. 16. 위원장 결재

○ 2014. 7. 18.자로 최진녕 전문위원 연임 위촉

**마. 전문위원 구성**

구분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수석 전문위원	이재권			
전문위원	황병헌 강동혁	김현아 오기찬	범 현 최진녕	강수진, 김혜정, 노수환, 이수정, 이진국, 최준혁

## V.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 접수 의견

연번	접수일자	의견요지
1	2014. 5. 15.	○ 재벌 및 공무원 관련 횡령, 뇌물 등 사건의 법정형과 선고형을 비교하여 법정형과 차이가 큰 선고형량에 의문을 제기하며 양형기준과 법정형의 관계, 양형기준의 근거 등에 대해 질의
2	2014. 5. 17.	○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하여 재범위험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적으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는 점, 추행 관련 초범의 정보도 공개하는 점, 공개 자체가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점 등 여러 불만을 토로하며 신상정보공개제도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 및 성범죄에 대한 양형이 높다는 의견 개진
3	2014. 5. 19.	○ 양형기준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대상기관과 관련하여 대상기관 중 시민단체의 선별기준, 참여연대 등 특정 성향의 단체들만 포함된 이유, 그 반대 성향의 단체들은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질의
4	2014. 5. 19.	○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요청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기준은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81조의6에 따라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가 설정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에 따라 권고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또한, 형사재판절차에서 법원은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선고할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선택된 형의 법정형에 법률상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범위로 처단형을 산

정하며, 이렇게 구체화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선고할 선고형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형사재판에서 선고형이 법정형보다 낮은 것은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경에 의한 것이며, 선고형이 법정형보다 낮다고 해서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법정형, 유사범죄 양형기준과의 형평성, 과거 선고형량에 관한 통계, 규범적 조정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개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국민 일반의 다양한 의견이 양형기준 설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성범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
- 다만,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제도의 검토 등 법령의 제·개정 및 개별 형사사건의 재판 결과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회신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법정형, 유사범죄 양형기준과의 형평성, 과거 선고형량에 관한 통계, 규범적 조정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개 공청회와 관계

기관 의견조치 절차를 거쳐 국민 일반의 다양한 의견이 양형기준 설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편, 양형위원회는 의견조치 대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해당기관과 조처 대상 양형기준안의 업무적 관련성, 형사사법제도 관련 활동 내역, 활동 빈도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설정 절차의 객관화·투명화라는 의견수렴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안에 관한 국민 일반의 상세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대상기관 선정 시 해당기관의 정치적 성향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향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 시 귀하께서 보내주신 고견을 참조하여 양형기준안에 관한 사회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폭 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

○ 4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

## 2. 서면질의 등 민원 및 회신

○ 접수의견

순번	접수일자	질의요지
1	2014. 5. 23.	○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달라는 의견 개선
2	2014. 5. 28.	○ 살인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3	2014. 5. 28.	○ 사기,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송부 요청
4	2014. 5. 28.	○ 마약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누범 가중처벌 등에 대한 불

		만 토로 및 광주지방법원에 마약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요청
5	2014. 5. 29.	○ 대형사고방지를 위해 다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요청 및 양형기준에 법적 구속력 인정, 양형위원회 소속 변경, 양형위원회 구성원 조정 등 요청
6	2014. 6. 3.	○ 소송당사자, 재판부, 상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재판의 양형이 5%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양형의 표준화, 세분화, 민주화, 민주주의 양형체제 현실화를 바란다는 의견 개진
7	2014. 6. 25.	○ 2014. 6. 3.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안」 은, 2010. 4. 형법 개정으로 인해 형법 개정 전 형이 확정된 무기수임에도 분류 및 가석방 심사가 중단된 현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특례법 제정에 앞서 기존의 무기수에 대한 분류 및 가석방 심사 재개가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

○ 1, 2, 6번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

○ 3번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

- 사기,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을 우편으로 송부함

○ 4번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절차 및 재판 결과, 각급법원의 재판부 설치 등 법원행정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회신

○ 5번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

- 대형사고방지를 위하여 다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양형위원회는 대법원 산하의 위원회이나 그 업무에 있어서는 법원과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양형위원회의 인원 구성 역시 위원장 포함 13인의 위원 중 법관은 4인에 불과하며, 양형위원회가 설정하는 양형기준에 권고적 효력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2012년 양형기준 준수율이 약86%에 이를 정도로 형사재판 실무에서 양형기준이 준수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양형기준에 법적 구속력 인정, 양형위원회의 소속 변경, 양형위원회 구성원의 조정 등 법원조직법의 개정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양형위원회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

○ 7번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법령의 제·개정, 수형자의 분류심사 및 가석방 처분 등 형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회신